

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재협약 동의안

의안 번호	368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1. 6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 시설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」이 2021. 7. 31일자로 종료 예정임에 따라 문화관광 플랫폼의 지속 발전 가능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위·수탁기간 연장(재협약) 계획을 수립하고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제2항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 동의 받기를 희망합니다.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 : 평창군 문화관광 플랫폼* 시설관리 및 운영
* 시설명 : 평창관광센터 ‘스페이스 창공’
- 나. 수탁자 : (사)평창관광협의회(대표 함봉호)
- 다. 재협약 기간 : 2021. 8. 1. ~ 2023. 7. 31.(2년)
※ 당초 위·수탁기간 : 2019. 8. 1. ~ 2021. 7. 31.(2년)
- 라. 소요예산 : 민간위탁금 101,125천원 (2021 당초예산 기준)
- 마. 시설현황
 - 소재지 : 평창군 진부면 송정길 110
 - 토지/시설 현황
 - 토지 : 송정리 1383-1번지 외 2필지(928.24㎡) ※ 국토교통부 소유
 - 건물 : 컨테이너구조 지상2층(연면적 933.2㎡)

3. 위치도 및 전경사진

위 치 도



전 경 사 진

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“재협약”이란 민간위탁 중인 위탁사무를 해당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그 기간을 연장하여 체결하는 위·수탁협약(이 조례에서 “협약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

제7조(의회의 동의) ② 군수는 재위탁 또는 재협약을 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 그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